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83 발의연월일: 2024. 12. 6.

발 의 자:황정아·장철민·박정현

박용갑・황명선・정동영

전혀희 • 한민수 • 김남근

조인철 • 박홍근 • 강준현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됐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밝혀졌음. 무장 군인을 동원한 국회 난입, 국회 출입 통제 등이 발생하면서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지연되었고, 헌법에서 수호하고 있는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심각하게 침해되었음.

결국 내란 범죄행위가 계엄이라는 명분 하에 이뤄진 바,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심의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아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통고 전까지는 계엄 령이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 그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등).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거쳐야"를 "거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국회에 대한 통고 전에는 계엄령이 발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 중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을 "회복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시간부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 제목 중 "불체포특권"을 "정치활동 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⑤
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u>거쳐야</u> 한다.	<u>거쳐 재적위원</u>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	
告)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u>이때 국회에 대한</u>
	통고 전에는 계엄령이 발효되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u>회복</u>	<u>회복</u>
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u>되는 경우</u>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	
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
		한 경우에는 그 시간부로 계엄
		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3조(국회의원의 <u>정치활동 보</u>
(생 략)		<u>장</u>)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
		<u>다.</u>